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
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수입신고) 법 제19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의3(수입신고확인증 발급) ①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3에 따라 관계 서류를 검사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업자에게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1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1. 수급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
2. 경미한 위반사항으로서 시중에 판매·유통하기 전에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경우

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부적합통보서를 해당 수입업자, 산림청장 및 관할 세

Ministry of Trade, Industry and Energy

이상엽 / 세계무역기구과 / 2017-09-05 15:32:10

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조건부로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해당 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서류를 통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보완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받기 전까지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판매·유통해서는 아니 된다.

④ 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조건이 이행된 경우 별지 제10호의4 서식의 적합통보서를 해당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수입업자가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검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산림청장은 제4항 후단에 따라 보고된 해당 수입업자 및 수입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지방산림청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수입업자에게 법 제19조의3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.

⑥ 검사기관의 장은 수입검사 실적 등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"장부"를 "장부와 합법벌채된 목재·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"로 한다.

별표2, 별지 제10호의2, 별지 제10호의3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Ministry of Trade, Industry and Energy

이상엽 / 세계무역기구과 / 2017-09-05 15:32:10

[별표 2]

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(제24조 제1항 관련)

1. 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

구분	장부명
1. 원목생산업자	원목 생산 및 판매 대장
2. 제재업자	가. 원자재 출납대장(화학처리제 출납대장을 포함한다) 나. 목재제품 생산 및 판매 대장 다. 품질 검사 및 관리 대장(작성자만 해당한다)
3. 목재수입유통업자	가. 원목·목재제품 수입 및 판매 대장 나. 품질 검사 및 관리 대장(작성자만 해당한다)

Ministry of Trade, Industry and Energy

2.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: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서류

이상엽 / 세계무역기구과 / 2017-09-05 15:32:10

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의2 서식] <신설 2017. . .>

수입신고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서류검사 3일

수입업자	사업자등록번호	대표자
	상호	
	주소 전화번호: (FAX:)	

수입신고 대행업자	사업자등록번호	대표자
	상호	
	주소 전화번호: (FAX:)	

신고내용	품명	거래품명	모델 · 규격
	총중량	순중량	총 포장개수
	수량	단가	금액
	성분	세번부호 (HSK번호)	
	생산국	수출국	
	생산회사명	주소	
	수출회사명	주소	
	선기명	국내도착항	입항일 년 월 일
	보관창고 (전화번호:)	화물관리번호	B/L번호

Ministry of Trade, Industry and Energy

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」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검사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」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서류 중 해당서류 2. 상업송장(INVOICE)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이상엽 / 세계무역기구과 / 2017-09-05 15:32:10

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의3 서식] <신설 2017. . .>

수입신고확인증

접수번호			접수일자	년 월 일
발급번호			발급일자	년 월 일
수입 신고인	사업자 등록번호		대표자	
	상호		주소	
품명			거래품명	
총 수량			총 중량	
화물관리번호			B/L번호	
생산국			수출국	
생산회사			수출회사	
세번부호				
수입신고확인증 발급조건				

제 품 내 용

NO	품명	성분	화물관리번호	수량 (단위:)	중량 (단위: kg)

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」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검사기관위 장 직인

Ministry of Trade, Industry and Energy

210mm×297mm 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 인사영 / 내매모의(리구고) / 2017.09.05 15:32:10

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 [별지 제10호의4 서식] <신설 2017. . .>

적 합(부적합) 통 보 서

수신 :

접수번호			접수일자	년 월 일
통보번호			통보일자	년 월 일
신고인	상호		대표자	
	주소			
품명				
총 수량		(단위:)	총 중량	(단위: kg)
총 금액		(단위: US$)	화물관리번호	
생산국			수출국	
생산회사				
수출회사				
입항일			보관창고	

제 품 내 용

NO.	품명	성분	화물 관리번호	수량 (단위:)	중량 (단위: kg)

합법성 적합여부	[ ] 적합 [ ] 부적합

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」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서류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적합(부적합)으로 판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검사기관의 장 직인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

Ministry of Trade, Industry and Energy

이상엽 / 세계무역기구과 / 2017-09-05 15:32:10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4조의2(수입신고) 법 제19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<신 설>	제14조의3(수입검사 등) ①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3에 따라 관계 서류를 검사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업자에게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1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. 1. 수급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

Ministry of Trade, Industry and Energy

이상엽 / 세계무역기구과 / 2017-09-05 15:32:10

	2. 경미한 위반사항으로서 시중에 판매·유통하기 전에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경우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부적합통보서를 해당 수입업자, 산림청장 및 관할 세관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라 조건부로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해당 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서류를 통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보완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받기 전까지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판매·유통해서는 아니 된다. ④ 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조건이 이행된 경우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적합통보서를 해당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수입업자가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검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이상엽 / 세계무역기구과 / 2017-09-05 15:32:10

	⑤ 산림청장은 제4항 후단에 따라 보고된 해당 수입업자 및 수입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지방산림청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수입업자에게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. ⑥ 검사기관의 장은 수입검사 실적 등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24조(지도·감독) ①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는 별표 2와 같다. ② (생 략)	제24조(지도·감독) ① 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장부와 합법벌채된 목재·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--. ② (현행과 같음)

Ministry of Trade, Industry and Energy

이상엽 / 세계무역기구과 / 2017-09-05 15:32:10